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

이중운**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and Its Limits*

Jong-Woon Lee**

요약: 본고는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조사하여 북한 국영기업의 변화 동향과 기업관리제도 개혁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영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확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은 북한당국이 시장기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제부문의 관리와 통제력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계획화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화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기업관리제도 개편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본고는 북한 국영기업의 관리체계 및 운영방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행의 내용과 특성, 문제점을 분석한다. 북한 국영기업의 변화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를 통해 김정은 시대 기업관리체계 개편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주요어: 북한, 국영기업,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장화, 경제개혁

Abstract: Through investigating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which forms the core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during the Kim Jong Un era,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management method and the tasks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mplies the regime's intention to institutionalize the market tendencies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its control of the economic sector.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and demonstrates the problems of the reform measures. This article could help in the furth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recent economic situ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n the Kim Jong Un era.

Key Words : North Korea, state-owned enterprises,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marketization, economic reform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Peace College of Liberal Arts, Hanshin University, jwlee@hs.ac.kr)

1. 서론

북한에서 2014년 도입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과 기업관리 체계 변화의 근간을 이룬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명명한 경제부문의 관리방식 개선 조치를 진행하며 생산단위의 자율성 확대 및 실적시스템 강화를 통해 산업생산 확대를 추진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은 중앙계획의 범위 축소와 지역 및 생산단위로 계획권한의 분담, 기업소의 자체 경영권 확대와 성과에 대한 책임 강화, 협동농장의 책임경영과 농민의 경작·분배방식 개선을 위한 포전담당책임제 도입 등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된 이후 국영기업 관리제도 및 운영방식의 변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 관영매체와 경제관련 문헌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의 성과를 소개하고 기업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 개편된 관리제도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으로 정의한다(두광익, 2018, p.137). 따라서 북한 경제문헌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을 통해서 기업체들이 생산계획, 조직운영, 재정관리, 제품 개발, 제품의 가격결정 및 판매, 무역 등의 기업운영에서 자율성과 책임이 확대되었음을 밝히고 있다(강철수, 2018; 김선화, 2016; 조혁명, 2017).

북한문헌에 나타나는 김정은 시대 기업관리체계 개혁의 기본 내용은 경영과 관련된 자율성 확대를 통

해 국영기업들이 자기 책임으로 자금과 원자재를 확보하여 생산과 수익창출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중앙계획의 범위 축소와 기업의 경영권 확대의 이면에는 국가로부터 물자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영자금과 원자재를 확보하고 생산활동을 수행하여 소속된 종업원의 생계를 해결할 책임이 법제도적으로 부과된 것이다.

국영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확대를 포함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은 북한당국이 시장기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제부문의 관리와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관리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체제의 외부적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2010년대 북한경제는 시장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상품, 서비스, 노동, 부동산 등에서 시장거래가 확산되었다. 선행연구들은 북한경제의 시장화 진전과 주민들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증가에는 김정은 정권의 시장을 활용하는 정책 기조와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조한범 외, 2016; 이석기 외, 2014; 임을출, 2016; 김부현·이승철, 2019). 북한 시장화 현상은 초기단계의 비공식 시장경제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식경제영역 및 국영기업의 작동과 밀접한 상호관계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경제관리방식 개혁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성이 있으며, 시장과 관련된 불법적 또는 반합법적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면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였다(양문수, 2016, p.29; 2017, p.105).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은 북한당국이 국영기업의 생산 증대와 실적 향상을 위해 시장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관리하는 국영경제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북한 국영기업의 최근 실태와 작동방식을 분석하고 기업관리제도 개혁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

다. 본고에서는 북한 국영기업의 관리체계 변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행의 내용과 특성,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에 따른 기업운영방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소법, 인민경제계획법 등의 경제 관련 법제도 개정의 검토와 함께 경제연구, 근로자,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등의 북한 학술지에 수록된 문헌을 조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북한 문헌과 국내의 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배경과 김정은 시대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본고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의 법제도 개편이 국영기업의 경영활동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들인 계획의 분권화와 기업의 생산 자율권 확대, 재정관리권 확대, 분배제도의 개선과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 등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본고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행에서 드러난 국영기업 관리체계 개편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북한 기업부문 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 과정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2012년부터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으로 알려진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진행되었다. 북한당국은 2014년의 ‘5·30 담화’를 통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을 정식화하면서 개편된 기업관리제도의 본격적 시행과 성과도출을 강조하였다. 2019년 4월의 헌법 개정에서는 1960년대 이후 북한 공업부문의 원칙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삭제되고 대신으로 제33조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명기되어 법제도적 위상이 확립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되고 기업운영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경제관리 개선조치들

을 일정 기간의 시범을 거친 후에 전면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추석용, 2022, p.31). 2012년에 일부 기업소와 협동농장에서 경영 자율성과 인센티브 확대, 분배방식 변화 등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이 시범 실시되었다. 2013년 3월 31일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을 표명하였다.¹⁾ 북한당국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를 위한 독립채산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세칙들을 마련하였다. 경제부문의 관리방식 개혁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2014년 5월 30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당,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다. 이른바 ‘5·30 담화’에서는 기업의 경영권과 자율성 확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 구성요소임이 제시되었다(추석용, 2022, pp.15-30).

이전과 다른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특징은 법제화를 통해 새로운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되는 2014년과 2015년에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관련한 주요 법령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보충되었다(양문수, 2017, p.83). 국영기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기업소법(2014년, 2015년)과 인민경제계획법(2015년), 재정법(2015년) 등이 개정되었다. 또한 북한은 협동농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생산·분배의 최하단위를 사실상의 가족영농의 형태인 포전담당책임제를 법제화하면서 농장법을 수차례 개정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에 따라 국가의 계획체계 및 재정관리, 기업의 경영권한 확대와 관련된 제도 개편의 내용이 입법화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과정에서 국영기업들은 계획권, 생산조직권, 노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등 12개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임을출, 2019, p.124). 기업소

법과 인민경제계획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계획 축소와 국영기업 운영에서 시장기능의 활용이 공식화되었다. 이러한 경제관리방식의 개혁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된 시장거래의 제도적 수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던 비공식 경제활동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영경제영역으로 끌어들이 통제력을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이석기 외, 2018, p.19).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과정에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에서 제한적이지만 시장경제활동이 합법화됨으로써 국영기업체의 시장과의 연계가 확대되었다.

2016년 5월에 개최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산업생산을 증대시키려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 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제개혁 병진노선의 고수 및 국제제재에 대응한 ‘자강력 제일주의’가 표명되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당국은 1990년대 이후 실시되지 못하였던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²⁾ 제7차 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과 창출을 강조하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 및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를 촉구하였다.

국영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산 증대를 이루려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 목적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7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보고내용에서 확인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기업체들이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³⁾

관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발표하며 관련된 2건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두 번째 결정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는 경제건설에 매진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북한당국이 제시한 전략의 중점 내용은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해야 하며, “경제사업에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질,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것이었다.⁴⁾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고강도 제재조치 지속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경봉쇄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2021년 1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북한당국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 하면서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과창출을 강조하였다. 당대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관리 개선의 중요성과 사업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성패는 경제관리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 시범적으로 연구 도입되고 있는 방법들과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잘하고 있는 단위들의 경험들을 결부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면서도 최량화, 최적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들을 연구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합니다.”⁵⁾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위기와 심화된 경제난을 거치면서 노동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은 보도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북한 지도부의 공개적인 언급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과 국영기업 관리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적 기초는 지속되었다(황주희, 2024, p.112).

2021년의 제8차 당대회 직후인 2월 25일에 개최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기업체의 독자적이고 주동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⁶⁾ 또한 2022년 4월의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지속해서 개선완성 해나가는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등에서 기업관리방식 개편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정착을 위한 사업들이 북한에서 진행되었다(추석용, 2022, p.37). 그리고 2020년대 들어 기업소법(2020년), 인민경제계획법(2021년), 재정법(2021년), 농장법(2020, 2021년) 등의 관련 법률이 추가 개정되었다(김미연, 2024). 개정된 기업소법에는 국영기업 내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을 통해 추진된 국영기업 관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계획의 분권화와 기업의 생산 자율권 확대

김정은 시대 진행된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 내용은 중앙기구에서 관리하던 국가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체, 공장, 협동단체 등의 개별 생산단위들의 권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생산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0년대 경제위기 이전 북한의 국영기업 관리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및 중앙기관에 의한 유일적 자재공급시스템 등의 중앙집권적 계획시스템을 기반 하였다(김영희, 2018, pp.87-101). 그러나 국가의 물자 공급능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국영기업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원자재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 시행된 생산단위의 자율성 확대조치는 국영기업 운영에서 제대로 작동하

지 않는 중앙집권적 관리체계와 확산된 시장경제활동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과 ‘기업소법’에는 국가의 계획화 체계를 변경하여 기업체의 권한을 증가시키는 경제운영에서의 역할 분담이 명시되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여 국가적으로 반드시 통제해야 할 계획수치를 ‘중앙지표’로 과거와 같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직접 작성·관리하고 그 밖의 것은 새롭게 신설된 ‘지방지표’와 ‘기업소지표’로 분담하는 것을 법제화하였다.⁷⁾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으로 중앙기구에 관할하던 계획 범위와 수는 크게 축소되고 기업체가 목표 달성을 강요받았던 ‘현물 계획’은 감소하였다. 개별 생산단위들은 ‘기업소지표’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양문수, 2017, pp.99-100). 개정된 기업소법 31조는 “기업소는 계획권을 가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업소지표는 기업소가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는데 따라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⁸⁾ 국가계획위원회가 책임지는 역할로 부여된 ‘중앙지표’는 국가적 전략지표, 국방공업부문에 생산·공급되는 지표, 경제발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표가 해당된다(강성남, 2016, p.59). 중앙지표의 수는 축소되고 기업소지표가 도입됨에 따라 국영기업이 수립한 생산계획을 반영한 경영활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이다(이석기 외, 2018, p.97).⁹⁾

개별 기업의 권한이 확대됨과 더불어 증대된 책임의 부여는 개정 기업소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기업소는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며 종업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¹⁰⁾

생산단위의 자율성 확대와 경영책임을 강조하는 조치가 취해진 이면에는 국가의 물자 공급기능이 약

화되었고 북한 기업들의 생산과 판매에서 시장과의 연계가 증가된 실태가 반영된 것이다.¹¹⁾ 북한 국영기업은 계획화에 따른 자금과 물자가 보장되는 기업들과 국가 지원에서 멀어지면서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환경에 처한 기업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국영기업 운영에는 다른 수준의 국가 통제 및 시장 의존이 작동한다(임강택, 2013; 이석기 외, 2014; 조한범 외, 2016). 기업소지표 도입을 통해 국영기업에 자체적인 생산계획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그동안 계획체제에서 이탈되어 있던 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생산활동을 공식영역으로 끌어들이 관리감독과 개입을 강화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이석기 외, 2018, pp.97-98).

북한의 경제 관련 문헌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국영기업은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판매, 수익관리에 이르는 경영활동 전반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된 점을 밝히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논문에서 김영홍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기관, 기업소들은 자체로 계약을 맺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해 나간다”고 제시하였다(김영홍, 2016, p.87). 최용남은 논문에서 “원료, 자재를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위에서 지령을 하는 방법으로 분배하도록 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최용남, 2016, p.104).

원자재 조달과 생산품의 판매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개편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당국은 기업들 간의 ‘주문계약’이행을 강조하였다. 북한 문헌에는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이란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어 계획경제 측면이 부각되지만, 수요단위와 생산단위에 주문을 하고 수요자와 생산자의 합의에 따른 상품계약 체결 형식이 제시되어 시장을 활용한 방식임을 시사한다.

국영기업의 운영관리에서 국가의 물자공급 여부가 중앙지표 및 기업소지표에 따른 기업의 계획수행을

결정한다.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에서 김성철은 “국가가 자재를 직접 보장해주고 계획화하는 지표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표들은 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방법으로 계획화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김성철, 2015, p.7). 따라서 최근 북한 기업의 원자재 조달은 국가의 자재 공급기관을 통한 방식, 생산기업과의 직접거래를 통한 방식, 시장 구입 등을 통한 자체조달 방식으로 다원화되었다(김영희, 2018, p.110). 전력, 석탄, 금속, 화학 등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생산수단과 중요한 소비품과 관련된 중앙지표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원료와 자재, 설비를 배정 받는 조건에서 중앙계약 수행을 위해 지정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계약을 진행한다. 기업소지표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기업체들 간에 자체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최용남, 2016, p.104). 기업소지표 도입과 함께 기업 간의 자체적인 원자재 거래와 생산품 판매에 대한 권한과 계약 이행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기업들이 생산제품을 자체로 정한 가격으로 수요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생산물의 가격 제정 및 판매’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북한 국영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큰 변화를 시사한다.¹²⁾ 국가에 의해 정해진 국정가격과 생산품 판매체제는 사회주의경제의 비효율성과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비록 공급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패하였지만 2002년 7월의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북한당국은 생활품목의 국정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가격과의 간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7.1조치 이후 기업소와 협동농장은 할당된 현물계획을 달성하고 남은 생산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¹³⁾ 2010년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으로 기업에게 부여된 가격 결정권과 판매권의 허용 범위가 공식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기업체가 행사하는 가격 제정권이 적용되는 대상은 “자체로 원료원천을 찾아 생산한 모든 제품과 수요자와 주문계약하여 생산한 제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¹⁴⁾ 따라서 국가의 물자공급 여부가 기업이 생산품

의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가격 제정권이 부여된 조치는 기업체가 원자재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산한 제품에 국정 가격을 적용받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북한 학술문헌에는 생산제품의 가격 책정에서 생산물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 것이 강조되었다. 생산품의 원가 계산에서 원자재, 연료를 국가에서 공급받았으면 국정가격이 적용되며,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입한 물자들에는 ‘실지 구입가격’이 적용된다(두광익, 2018, pp.137-139; 김선화, 2016, p.127).

북한 문헌에 ‘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지만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한 가격은 사실상 시장가격으로 기능한다. 국정가격이 적용되는 ‘중앙지표’의 경우에도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했을 때는 해당 생산품은 시장가격이 원가 계산에 적용된다. 따라서 원자재의 조달 경로가 국가 또는 시장이냐에 따라 동일한 생산품이라도 다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임수호, 2019, pp.4-5).

개정된 기업소법 제39조에는 “기업소지표로 생산한 생산물을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거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사실상의 시장을 활용한 생산품 판매를 인정하였다.¹⁵⁾ 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 등의 주민 수요가 많은 제품들은 도매기관, 소매기관, 직매점과 직접계약을 맺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지표’의 물적계획 수행에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생산품이 기업의 자체 결정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이석기 외, 2018, pp.109-110).

또한 기업들은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통해 국가 계획과는 별도로 원자재와 기계설비 등의 생산수단을 거래할 수 있다.¹⁶⁾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도입하여 물자공급 부족을 보충하려 하였으나, 물물교환 방식은 기업들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규모와 품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대금결제 방식으로 은행을 통한 현금 거래가 허용되었다. 북한당국은 사

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시·군별로 설립하게 하여 지역을 확대하였다(최용남, 2016, p.105).

국영기업들이 생산품의 가격과 판매처를 결정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경영활동에 확대됨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영기업이 생산품 가격을 제정하는데 있어 원가의 개념이 강조되고 생산비용을 보상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을 북한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북한 기업의 생산품 판매가격 책정에서 다양한 시장 요소들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자재의 구입비용, 노동비용, 물류비용,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두광익, 2018, pp.138-139).

2010년대 들어 북한당국은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적 향상을 통해 수요 확대를 강조하였다. 주목할 변화는 가격을 생산품의 질 향상을 추동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생산물 가격 책정에서 품질을 고려하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경제문헌은 기업 평가에서 생산물의 양적 측면에 치중하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생산품의 질적 향상과 수요가 높은 제품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¹⁷⁾ 기업은 생산제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는 등급별 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계획수행 평가에서도 제품의 질적 향상이 포함되었다(박원일, 2018, pp.111-112; 장현식, 2016, p.100).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가격 기능을 활용하여 높은 등급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수입을 늘리고 자체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4. 기업의 재정 관리권 확대 및 민간자금 조달 허용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분배·이용하는 권한인 재정 관리권이 개별 기업체에 부여되었다. 2014년

개정된 기업소법에는 재정관리와 관련해 “기업소는 재정관리권을 가지고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며 경영 활동을 원만히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규정한다.¹⁸⁾ 과거 계획경제체제에서 국영기업은 국가로부터 생산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재정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당국은 기업이 경영활동 자금을 자체로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확보할 의무도 기업에 넘기는 조치를 한 것이다(김영희, 2018, p.108; 이석기 외, 2018, p.110).

기업에게 필요한 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북한당국은 은행 대부자금과 과거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자금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기업소법 제38조는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영기업의 민간자금 조달을 합법화하였다.

기업소지표의 도입과 함께 기업의 재정 관리권이 확대됨에 따라 국영기업의 계획 수행 평가방식과 수익의 국가납부제도가 변경되었다. 생산물의 수량계획에 해당하는 ‘현물계획’은 축소되고 기업에 대한 금액상의 목표인 ‘액상계획’ 수행이 확대되고 기업의 실적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지표 위주로 운영되던 기업의 계획수행률 평가를 개선하여 기업소지표 수행률을 포함하게 되었다(임수호, 2019, p.4).

김일성종합대학의 강철수 교수의 논문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기업체들은 국가계획기관이 맞물려주는 중앙지표와 지방지표의 생산물 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채산을 맞추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채산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소지표의 생산물들을 계획에 맞물려 생산하고 판매 실현하여 자체의 수입으로 채산을 맞추게 된다”고 명시하였다(강철수, 2019, p.12). 국가계획기관이 하달한 생산물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소지표의 수행을 높여

재정을 확보하면 계획목표 달성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영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에서 생산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과 국가납부금 계획 수행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2010년대 들어 국영기업의 매출액에서 국가납부금 등의 세금을 지불하고 남은 자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임수호, 2019, pp.4-6). 7.1조치 이후 기업의 실적평가는 ‘번 수입’을 기준으로 실시되었는데 목표한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입을 거둘 경우에는 기업이 수익을 재투자 재원이나 종업원 상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소의 분배 항목 중에서 자체 ‘류동자금’의 조성은 가장 낮은 순위였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황수민·양문수, 2020, p.178).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으로 재정 관리권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수입의 일정한 비율로 국가납부금을 지불하고 남은 자금을 ‘자체 충당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석기 외, 2018, pp.116-117). 개별 기업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은 투자 및 운영자금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국가납부금제도가 개편되고 북한당국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면서 2010년대 예산수입 계획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 재정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북한의 전체 예산수입은 3.1-4.3%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북한 예산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전체 예산수입 계획에서 2018년에는 85.3%, 2019년에는 85.7%를 차지하였다(최지영, 2021, pp.4-5). 생산단위에서 납부하는 국가기업이익금의 2010년대 연간 증가율이 다른 예산수입원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예산납부 여력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⁹⁾

재정 관리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당국은 금융 측면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던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공식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해 ‘현금돈자리’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다(황수민·양문수, 2020, p.180). 북한 기업의 시장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유한 상당량의 현금을 은행의 계좌(돈자리)를 이용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거래하는 실정이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 이후 현금돈자리를 개설한 기업은 주문계약에 의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조성된 현금과 계획 수행과정 외에 조성되는 현금을 내화와 외화로 입금할 수 있게 되었다(추석용, 2022, p.26). 원자재를 확보하고 생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금 거래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비공식적으로 유통하던 자금을 금융기관을 거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북한당국은 기업소법과 농장법을 개정하면서 기업과 협동농장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민들이 보유한 유희화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²⁰⁾ ‘돈주’로 대표되는 자본가들이 보유한 자금을 국영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돈주들은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산을 축적하였고 돈주의 투자처는 상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제조업, 무역업, 광업, 운송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돈주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우철, 2016, pp.130-143).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화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기업들이 자본력을 가진 돈주와의 거래를 통해 생산 실적 향상을 추진하려는 시도이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실린 2016년 논문은 “현실에서 주민들 수중에 잠겨있는 방대한 량의 내화 및 외화현금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민들이 보유한 자금을 은행 예금이나 기업 투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고금혁, 2016, p.13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이 개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동안의 비공식적 관행을 제도 내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분배제도의 개선과 물질적 인센티브의 강화

2010년대 북한은 기업관리제도 개편을 통한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분배제도의 개선과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차등 임금제도 도입과 같은 방안들은 2002년의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었다.²¹⁾ 과거의 비현실적 국정가격 및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평균주의적 분배 경향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북한당국은 ‘평균주의’와 ‘공짜’ 배격을 강조하였다(리기반, 2003, p.21). 그러나 공식임금으로는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7.1조치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증진에는 성과가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기존의 평균주의적 분배에 의해 초래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근로자 임금의 차등 지급 등으로 지속되었다.²²⁾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된 분배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은 2000년대 북한 기업에서 도입·운영되어 왔던 방식들이 법률개정을 통해 공식화되고 ‘노동보수 자금의 조성 및 지불권’ 부여로 확대 시행되었다. 북한당국은 2012년 6월에 독립채산제 기업소·공장들의 노동보수 계산 및 지불방식을 소득분배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가납부금을 지불한 다음에는 기업의 재량으로 근로자 보수를 조성·지불할 수 있도록 시험 단위들에서 시행하였다. 2013년 3월에는 이러한 조치가 전국의 기업소와 공장으로 확대되었다(추석용, 2022, pp.27-28).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으로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수익을 소속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물질적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2014년 기업소법의 개정으로 기업 실적으로 소득분배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마련되었다. 기업소법 제48조는 “기업소는 노동보수자금을 소득에서 분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영수입과

소득을 끊임없이 늘여 로동보수자금의 분배규모를 종업원들의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기업소법 제51조에는 종업원의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살림집, 부식물, 빨감 공급 같은 생활상 문제들을 기업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기업관리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차등 임금제가 강화되면서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조건이 소속된 기업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직장의 종업원 보수도 다르게 지급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경제연구에 실린 최진수의 2015년 논문은 북한에서 ‘새로운 노동보수 계산지불방법’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편된 노동보수계산지불방법은 “공장, 기업소들이 창조한 기업소 소득에서 자체 결심에 따라 로동보수 원천을 조성하고 그 원천범위에서 개별적 종업원들의 로동보수를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계산하여 현금이나 현물로 지불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하였다(최진수, 2015, p.10). 노동보수 계산 및 지불방식을 다룬 2010년대 북한 학술문헌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개별적”이란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기업소 내에서 사람별로, 생산단위별로 노동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종업원 보수를 차등 지급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기업체들이 초과 이윤을 달성해서 성과급에 해당하는 상급과 장려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도록 권장하였다(장경환, 2015, p.47; 럽병호, 2019, p.17).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의 종업원은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고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다양화되었다. 기업관리 개선조치가 2012년에 시범 실시된 평양의 3.26 전선공장의 경우는 임금이 1년 만에 20-30배 인상된 것으로 보도되었다.²³⁾ 성과를 내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같은 일부 기업의 노동자들은 월 400,000원 이상을 받으며 급여의 대부분은 성과급이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해산 소재의 신발공장은 임금이 30,000원에 불과해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이 크게 차이 난다고 알려졌다.²⁴⁾ 개별

기업들이 종업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속된 직장의 실적이 근로자의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6.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한계와 문제점

1) 계획화 체계의 유지와 시장화의 제한적 수용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는 북한 국영기업의 운영에서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권 확대와 국가의 경제부문 통제력 강화 간의 상충되는 목표로 인해 새로운 기업관리제도 시행은 갈등과 불안정성이 유발된다. 경제관리방식 개편으로 국가에서 관할하는 계획의 범위와 수는 축소되었지만, 북한당국은 계획화 체계에 따른 중앙지표와 국정가격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국영기업의 자율적인 활동과 생산실적 향상을 제약한다(이석기 외, 2018, p.16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국영기업의 운영형태는 산업별, 기업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전략적 중요도에 따른 국가의 자금 및 물자투입 여부와 통제 수준에 따라 북한 기업소·공장의 운영에서 시장 활용도가 차이난다. 북한당국이 중시하는 군수공업과 산업정책에서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전력 및 철도와 같은 기간산업과 중공업 부분의 대규모 기업소에는 중앙기관의 개입 수준이 높아 계획경제의 특성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임강택, 2013). 반면 경공업 부문, 중소 규모의 공장, 지방단위 기업, 무역회사에는 기업의 생존과 종업원 생계를 위해 시장경제활동이 활발하다. 규모, 소속, 형태에 따라 국영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의 계획지표 수립 및 생산관리, 재정관리, 원자재 확보, 생상품 판매 등의 기업관리제도 개편의 내용들이 사업 현장에 적용

되는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북한당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기간산업과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강한 통제가 작동하는 중앙집권적 물자공급체계의 유지를 강조한다.²⁵⁾ 이러한 기업소와 공장은 중앙지표가 적용되며 중앙기관이 기업의 계획수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중앙지표를 받는 기업체는 국가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조건을 충족한 이후 기업소지표를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기업소지표에 대한 주문계약에서도 중앙지표의 생산과 관련된 대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자체적인 기업소지표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김경옥, 2017, pp.13-14; 최용남, 2016, p.104; 럽병호, 2019, p.17). 또한 기업소지표가 적용되는 주문계약은 해당지역의 통계기관에 등록하도록 기업소법에 규정되었다.²⁶⁾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의 시행으로 기업에게 가격 제정권과 생산품의 판매권을 부여하였지만, 국가가 원자재를 제공하고 중앙계획지표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은 국정가격이 여전히 적용된다(두광익, 2018, p.138). 따라서 자본재와 중간재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은 국정가격이 적용되며 시장을 통한 원자재 조달 및 생산품 판매가 많지 않아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과는 달리 시장화 수준이 낮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논문에서 조길현은 생산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생산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업체들 간의 설비·자재의 물자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길현의 논문은 사회주의경제의 전통적인 방식인 국가계획에 따른 물자공급이 국영기업 생산체계에서 원칙임을 강조하며 기업체들 사이의 거래는 “철저히 국가의 계획적인 물자공급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강조하였다(조길현, 2018, p.96).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의 하에서 중앙지표와 지방지표에 따르는 생산물은 국가 중앙계획에 의해 도매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었고, 기업소지표에 의한 생산물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강철수, 2018, pp.56-57). 이러한 조치는 북한경제에서 중앙계획기관이 정하는 국정가격과 함께 기업이 결정하는 시장가격이 공존하는 이중가격제도(dual track price system)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5년에 가격 이원화를 공식화한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초기과정에서 가격과 판매에 대한 기업의 재량권 확대가 경쟁환경의 조성 and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 사례가 제시하듯이 북한당국이 시장가격 적용을 허용한 것은 국영기업의 효율성과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의 시행으로 국영기업에게 부여된 가격 제정권과 생산물 판매권한의 폭은 크지 않으며 더욱이 가격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당국은 기업소지표가 적용되는 생산품의 가격 제정에 대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및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중앙가격기관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등의 문구를 명시하여 새롭게 도입된 기업소지표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도 시장의 실제가격 반영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체가 제정한 제품의 가격은 해당지표와 함께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두광익, 2018, p.137). 중앙지표 수행을 위해 국정가격이 적용된 제품의 생산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기업체가 스스로 확보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가격과 판매에 대한 재량권조차 제한적으로 운용된다면 생산과 수익창출의 성과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투자자원 확보의 어려움

북한 산업과 국영기업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설비의 개선과 원자재 공급을 위한 투자자원 조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0년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의 시행과정에서 북한당국은 투자자금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영기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시행한 일부 법제도 개편마저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에서 외자 유치가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22개 지역을 중공업 또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핵문제로 인한 대외관계 악화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전무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가 시행되면서 북한당국은 생산기업체에게 직접적인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있는 무역권을 부여하고 해외기업과의 독자적인 합영·합작사업을 허용하였다.²⁷⁾ 기업체가 무역과 합작사업을 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계약체결, 수출기지 조성, 생산물의 해외 판매뿐만 아니라 국내 및 외국 은행들과 대외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었다(김홍일, 2015, p.72). 과거 국가기관에 소속된 무역회사들이 가지던 대외무역권을 생산기업체로 확대한 조치는 수출로 확보한 외화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과 원자재, 설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입한 것이다(최용남, 2016, pp.105-106). 이러한 무역분권화 조치는 기업의 설비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중국에 의존하던 북한의 대외무역이 고강도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크게 축소된 사실에서 보듯이 기업의 무역권 확대와 관련된 조치는 성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외자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국영기업이 투자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주민들이 보유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기업소법과 농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과 협동농장이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불법이었지만 시장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돈주의 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행위를 제도 안으로 수용하려는 시도이다. 이미 2000년대부터 북한 기업들은 돈주와 다양한 형태로 거래를 하였으며, 원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을 대여 받아 생산품의 일부를 현물로 상환하거나 수익금으로 되갚는 방식이

활용되었다(조한범 외, 2016, p.140). 그러나 개인 자금의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대여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서 국영기업이 돈주 자금을 공식경로를 통해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기업소법에 기업이 주민 보유의 유휴화폐자금 동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자금의 활용 범위와 용도, 수익의 상환방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양문수, 2017, p.111). 개인 자금의 대여 또는 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가 여전히 미미한 상태에서 보유한 자금의 실태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주들이 국영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은 낮다.

재력이 있는 주민들의 자금을 기업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려면 북한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보호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또한 중소형 경공업 기업 및 지방공장 중에서 개인의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은 투자자에게 경영관리를 맡기는 더욱 과감한 방식의 국영기업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영 자율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규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기업의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의 초기 경제개혁과정에서 도입된 ‘임대경영책임제’는 급진적인 사유화를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관리제도 개혁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제시한다.²⁸⁾ 북한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경공업 공장과 중소 규모의 지방기업의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주들이 국영기업의 외형을 갖추고 내부적으로 자신의 자금과 설비를 투입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현상이 지방공장과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임을출, 2016, p.101; 조한범 외, 2016, p.140). 그러나 돈주의 이러한 사업 운영과 영리활동은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개인의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는 시장을 통제하려는 북한당국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본력이 있는 주민의 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는 존재하지만 합법화되지 않고 있는 개인 사업가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임대경영책임제와 유사한 형태로 북한은 비전력 기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 지방공장들은 능력을 갖춘 개인에게 임대하여 경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노동 개혁의 부재

북한의 기업관리제도 개편 내용에는 노동자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임금제도 개선이 포함되었고 개별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활용해 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용과 인력수급에 대한 기업체의 권한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은 인력관리기관이 노동력 배치와 통제를 하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는 문제가 있다.

2010년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과정에서도 노동부문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2014년에 개정된 기업소법 제33조에는 기업소가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을 가지고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한다고 명시하였다.²⁹⁾ 국영기업에게 인력을 국가기관에서 배정받거나 초과인력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인원을 축소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김영희, 2018, p.111). 2015년에 개정된 기업소법에는 전년도에 없었던 “로력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거나 기업소 사이에 주고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법률출판사, 2016, p.396). 이 문구의 보충은 기업체 운영에서 노동력 규모 조정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영기업에 부여된 ‘로력 조절권’은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권한이 아니며, 기업들 간의 합의에 따라 노동자를 주고받는 수준에 불과하다(이석기 외, 2018, pp.126-127).

채용 및 해고와 관련한 기업의 재량권이 없는 상태

에서 가동률이 낮은 북한 기업에는 유휴상태에 있는 인력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여 국영기업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경제개혁 초기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국영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조치가 추진된 사례는 향후 북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부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수급을 관리하던 방식이 종결됨과 함께 중국 기업에서는 종신고용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계약에 의한 고용이 실시되었다. 신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계약제가 1983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994년 제정된 노동법에 의해 노동계약제가 표준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박영자 외, 2016, p.50). 계약노동제 도입이후 전체 고용에서 계약노동자는 1985년에 4%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에는 13%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29%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중국정부는 노동자 해고를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기는 했지만 국영기업들은 연간 1% 이내에서 인력 해고가 허용되었다(Cai *et al.*, 2008, pp.171-172).

북한당국은 인력수급에 대한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의 고용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국영기업들에 만연한 유휴 노동력 문제와 ‘8:3 노동자’활용과 같은 비정상적 관행이 지속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기업들에는 출근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소속을 유지하는 소위 ‘8:3 노동자’가 일정 비율로 존재하며 많은 직장에서 관행화 되었다(박영자 외, 2016, p.137). 더욱이 북한 노동자들은 국가가 정해진 직장에 근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국가의 직장배치와 통제는 노동자들의 낮은 근로의욕과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에게도 경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자들이 이직하여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더불어 기업들이 자체의 실정에 맞게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7. 결론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시행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동반된 국영기업 관리체계 개편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는 북한 법령과 경제분야 문헌을 조사하여 김정은 시대의 기업관리제도 및 운영방식 변화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계획을 축소하는 개혁적 요소를 담고 있다. 기업소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이 확대되고 시장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영역이 커졌다. 국영기업의 실적 향상을 추진하려는 기업관리제도 개편에 따라 기업들은 권한이 확대됨과 동시에 경영 성과와 종업원의 생계에 대한 책임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화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요소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북한의 기업운영방식 개혁은 제도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국영기업의 경영권 확대와 국가의 경제부문 통제력 강화라는 상충되는 목표로 인해 새로운 기업관리제도는 실제 적용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새로 제정된 기업소지표는 경제관리의 분권화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중앙지표와 국가기관이 하달하는 물적계획 수행이 기업에게 강제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생산계획, 원자재 조달, 인력관리 등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개입과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기업에게 부여하였지만, 국정가격은 여전히 원칙으로 적용된다. 또한 기업들은 종업원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강요받기만 할 뿐 고용과 인력수급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국영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실행되어야 제도개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은 고강도 제재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고 산업역량 증

진에 한계가 명확하다. 북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였던 2010년대 중반 이후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더욱 강조하였다. 김정은 시대에서 산업생산 증가는 식품, 의류 등의 소비재 부문을 위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들의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발전과 수입대체정책은 국내외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지속이 어렵다. 대외관계 악화와 고강도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기업들의 무역과 해외시장 진출, 투자 유치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 실례로 2017년의 UN안보리 결의안 2375호 채택에 따라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의류는 중국기업과의 위탁가공거래가 중단되었다(Lee and Gray, 2020). 지금과 같이 국제무역체제 진입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기업운영방식의 제도개혁을 추진하더라도 북한의 산업회복과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와 사회통제 강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과 기업관리제도의 개편은 담보상태에 처해 있다. 고강도 경제제재와 코로나19 사태의 중첩된 외부충격은 북한의 산업생산 하락과 물자 부족을 야기했다. 또한 경제상황 악화는 국가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³⁰⁾ 주민생활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2020년대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은 당국의 통제력이 확대되고 기업에게 계획수행을 위한 강한 규율과 복종을 강요하는 기초를 보이고 있다(김미연, 2024, p.107).

2014년 공식화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시행 10년이 경과하도록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악화된 대외관계와 경제상황으로 인해 기업관리제도 개혁을 뒷받침하는 대내외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실패와 심화된 재정난이 반증하듯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북한당국이 기대하였던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시장기능 활용을

포함하는 기업운영방식 개편에 대한 정책기조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정비와 보완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추진은 보다 구체화되었고 2020년대 들어 기업소법, 인민경제계획법, 농장법 등의 법률이 추가적으로 개정되었다. 기업의 경영권과 시장 활용범위 확대 등의 개혁적 요소를 담고 있는 기업관리제도 개편이 시도되는 것은 긍정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대외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없이는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목표로 내세우는 산업 회복과 주민생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

- 1)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 2) 로동신문 (2016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 3)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김정은.”
- 4) 로동신문 (2018년 5월 5일), “필승의 신심 드높이 경제건설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 5) 로동신문 (2021년 1월 13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 김정은.”
- 6) 조선중앙통신 (2021년 2월 26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2015년 6월 25일 개정), 제13조 - 인민경제계획지표의 분담 (법률출판사, 2016, p.532).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2014년 11월 5일 개정), 제31조 -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 9) 계획 수립체계의 다원화와 기업의 자체적인 계획 수립방식의 도입은 1960년대 중반이후 북한 계획경제의 핵심운영 원칙이었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가 작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김영희, 2018, p.107). 경제연구의 논문에서 김성철은 “계획경제라고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생산경영 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중앙에서 계획화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명시하였다(김성철, 2015, p.7).
- 10) 기업소법, 제29조 (기업소의 경영권 행사).
- 11) 북한의 경제문헌에는 “기업체들이 국가로부터 원료, 자재를 보장받지 못한 조건에서도”라는 표현이 빈번히 나타난다. 중앙지표의 계획수행이라 하더라도 기업체는 국가의 물자공급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 자체의 힘으로 원자재를 확보해 생산 확대를 하기를 강조하는 것이다(김경옥, 2017, pp.12-13).
- 12) 기업소법, 제39조 (생산물의 가격제정 및 판매).
- 13) 조선신보 (2003년 12월 24일), “검증되는 개선조치의 생활력.”
- 14) 북한 학술지인 경제연구는 2017년 4호의 ‘상식’부록 페이지에서 ‘가격제정권’ 내용을 다루었다.
- 15) 기업소법, 제39조 (생산물의 가격제정 및 판매).
- 16)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은 기업소와 공장에서 이용되지 않거나 용도가 맞지 않는 설비와 자재, 부속품 등을 기업들 간에 유무상통(有無相通)의 방법으로 교환하는 생산물 유통영역이다. 식량, 식료품, 옷 등의 소비재는 거래되지 않고 생산재만을 거래한다(최용남, 2016, p.105).
- 17)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경제문헌들은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의 강조는 국영기업이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효율성의 제고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조한범 외, 2016, p.147).
- 18) 기업소법, 제38조 (재정관리).
- 19) 설비 교체나 투자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항목인 ‘국가투자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북한 기업소는 2014년부터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기업 내에 유보하여 생산자금으로 운용하게 되었다. 기업이 적립할 수 있는 자금을 확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이 부족해지자 2021년에 국가 예산수입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최지영, 2021, p.5).
- 20) 기업소법, 제38조 (재정관리); 농장법, 제43조 (자금이용 및 재정총화).
- 21) 조선신보 (2003년 10월 24일), “대안 중기계, 40대 지배인의 구상 - 과거의 부정이 아닌 체계의 재구축을.”
- 22) 김일성종합대학보에 실린 논문은 “로동에 대한 평가와 분배에서는 절대로 평균주의를 하지 말고, 근로자들의 로동활동결과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한데 기초하여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웅주, 2013, p.80).
- 23) 조선신보 (2013년 4월 24일),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시도.”
- 24) 중앙일보 (2018년 10월 11일), “월급 4000원인데, 담배 한 보루 5000원? 北 임금 미스터리.”
- 25) 북한 문헌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과 기업으로 파악된 사례로 산업인프라와 중공업의 경우는 수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시멘트와 철강재, 화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석탄, 석탄 공업에 필요한 철강재와 폭약, 금속공업부문에서 정광과 전력이 있다. 중공업부문의 경우는 합성수지와 합성섬유의 원자재 공급사업을 국가계획위원회가 관리하

- 며 중앙지표가 설정된다(최용남, 2016, pp.103-104).
- 26) 기업소법, 제31조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 27) 기업소법, 제37조 (무역과 합영, 합작).
- 28) 임대경영책임제는 정부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임차경영자에게 계약을 맺고 소형 국영기업을 임대하면 경영자는 임대료를 국가에 내고 기업을 직접 관리하며 손익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였다(박영자, 2016, pp.52-53).
- 29) 기업소법, 제33조 (관리기구와 노력조절).
- 30) 북한의 예산 수입 및 지출계획 발표에서 재정여건 악화가 확인된다. 실제로 2021년 국가예산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0.9%로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예산규모 증가율은 김정은 집권 이후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최저치였다(최지영, 2021, p.4).

참고문헌

- 강성남, 201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개선완성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2(2), pp.57-59.
- 강철수, 2018, “현시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지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방도,” 경제연구, 2018년 4호, pp.56-57.
- 강철수, 2019, “현시기 사회주의기업체들의 경영지출보상에서 나서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65(1), pp.10-20.
- 고금혁, 2016, “현시기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2(4), pp.130-132.
- 김경옥, 2017, “사회주의기업체들의 확대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행사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2017년 1호, pp.12-14.
- 김미연, 2024,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경제 관련 개별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9(1), pp.79-111.
- 김부현·이승철, 2019, “절합된 (비-)경제적 관행의 공간과 사회적 재생산: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접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4), pp.381-404.
- 김선화, 2016, “현시기 기업체들의 가격제정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2(4), pp.126-129.
- 김성철, 2015,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5년 3호, pp.6-7.
- 김영홍, 2016, “현시기 협동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2(2), pp.85-87.
- 김영희, 2018, “김정은 집권 이후 기업관리운영체계 변화 연구,” KDB북한개발 14, pp.80-128.
- 김홍일, 2015,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1(4), pp.71-77.
- 두광익, 2018, “기업체들에서의 가격제정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4(3), pp.137-141.
- 렴병호, 2019, “현시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의 리용,” 경제연구, 2019년 2호, pp.16-18.
- 리기반, 2003,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구현하는 것은 경제관리개선 완성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2003년 2호, pp.19-21.
- 박영자·조정아·홍제환·현인에·김보근, 2016,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통일연구원.
- 박원일, 2018, “생산물의 질제고에서 경제적공간의 합리적 리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4(3), pp.110-113.
- 법률출판사,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 법률출판사.
- 양문수, 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한울 아카데미.
- 양문수, 2016,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18(1), pp.13-34.
- 양문수, 2017,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2), pp.81-115.
- 이석기·양문수·정은이, 2014, 북한 시장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 이석기·권태진·민병기·양문수·이동현·임강택·정승호,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임강택, 2013, 북한경제의 비공식부문 실태 분석: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임수호, 2019,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분석

-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4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임을출, 2016,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사금융과 돈주, 한울 아카데미.*
- 임을출, 2019, “김정은 시대의 기업관리방식과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7(1), pp.115-142.
- 장경환, 2015, “공업기업소의 화폐축적과 분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5년 1호, pp.45-47.
- 장현식, 2016, “현물지표별 계획수행평가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2(2), pp.99-101.
- 조길현, 2018, “기업체들 사이의 물자교류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4(3), pp.95-100.
- 조웅주, 2013,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을 완성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59(3), pp.77-80.
- 조한범·임강택·양문수·이석기, 2016, 북한에서 사적경제 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일연구원.
- 조혁명, 2017,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하에서 경영지출보상의 경제적 내용,” *경제연구* 2017년 4호, pp.18-19.
- 최지영, 202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분석: 예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1-04.
- 최진수, 2015, “현시기 기업관리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2015년 3호, pp.10-11.
- 최용남, 2016, “현시기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2(3), pp.103-106.
- 추석용, 2022,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추진 과정과 특징,” *북한학연구* 18(1), pp.5-49.
- 황수민·양문수, 2020,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26(1), pp.167-197.
- 황주희, 2024, “김정은 시대 기업경영 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23(1), pp.111-128.
- Cai, F., Park, A. and Zhao, Y., 2008, *The Chinese Labor Market in the Reform Era*, Brandt L. and Rawski, T., *China's Great Economic Trans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7-214.
- Lee, J-W. and Gray, K., 2020, “North Korea, apparel production networks and UN sanctions: Resilience through informality,”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23(4), pp.373-394.
- 교신: 이종운,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전화: 031-379-0730, 이메일: jwlee@hs.ac.kr
- Correspondence: Jong-Woon Lee, Peace College of Liberal Arts, Hanshin University, Osan, Gyeonggi, 18101 South Korea, Tel: 82-31-379-0730, E-mail: jwlee@hs.ac.kr

최초투고일 2024년 08월 23일

수정일 2024년 09월 13일

최종접수일 2024년 09월 21일